

2025 년 2 월 5 일

전자선하증권: 신규 절차에 대한 통지

개 요

1. International Group(이하 “Group”)은 2025 년 2 월 20 일부터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‘승인된 것으로 간주’ 합니다. ‘승인된 것으로 간주’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 - i) 해당 시스템이 종이 기반의 선하증권과 동등한 법적 인정을 부여하는 준거법의 적용을 받는 전자선하증권(“E-Bills”)만을 허용해야 하며;
 - ii) 해당 시스템이 신뢰성 및 아래 7 ii)에 명시된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.
2. Member 를 지원하기 위해, 앞으로는, 요건을 충족하여 Group 에 승인 요청하는 모든 시스템의 제공업자는 Group 의 웹사이트에 등록됩니다. 이는, 아래 8 에 언급된 기존의 Group 승인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시스템 뿐만 아니라, ‘승인된 것으로 간주’ 되는 시스템에도 적용됩니다. 향후 모든 제공업자에 대한 승인 절차와 관련된 추가 지침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

배 경

3. Club 의 Rules 에서는, 전자거래시스템 하에서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은, Group 이 먼저 승인한 시스템의 경우에만 담보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E-Bills 의 법안에 대해 광범위한 인식이 부족했던 당시에, Member 의 P&I 담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Group 의 승인 절차가 있었습니다. Group 은 2010 년 2 월 20 일부터 13 개의 전자거래시스템을 승인하였습니다.
4. 분산원장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새로운 입법은 E-Bills 시스템 개발의 촉매제 역할을 해왔습니다. 예를 들어, 2023 년 9 월, Group 은 영국법에서 E-Bills 를 포함한 전자거래문서에 대해 법적 인정을 부여하는 영국의 Electronic Trade Documents Act(이하 “Act”)를 환영하였습니다. 본 Act 는 2018 년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(UNCITRAL)가 채택한 통일된

모델법인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(MLETR)의 요건을 충족합니다. 타 국가도 유사한 법안을 채택했거나 채택할 계획입니다.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(“ICC”)의 Digital Standards Initiative 에서는 국가별로 입법과 관련한 [업데이트](#) 정보를 제공합니다.

5.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, Group 은 2023 년에 Group 의 입장을 검토 및 종이 기반의 선하증권과 동등한 유효성을 인정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E-Bills 만을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승인을 간소화하는 접근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. 동시에, Group 은 “[FAQs](#)”를 발행하였습니다.

입법 변화의 영향

6. 상기 Act 에 따라, E-Bills 의 효력은 시스템의 신뢰성을 전제로 하며, 본 Act 는 신뢰성 검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엄밀히 말하면 법적 검사이지만, 기술이 특정 신뢰성 요건을 충족한다면, 법률이 충족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술적 검사입니다. 본 Act 가 시행된 이후, 산업 단체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신뢰성 및 공통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산업 표준을 검토해 왔습니다. ICC Digital Standards Initiative 는 [디지털 무역 신뢰성 평가 도구](#)를 출시하였습니다. 현재까지 Group 은 다른 유사한 Initiative 를 인지하지 않고 있습니다.
7. 이러한 입법과 산업 및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, Group 의 Club 의 이제 접근 방식을 더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. 2025 년 2 월 20 일부터 시스템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‘승인된 것으로 간주’ 됩니다.
 - i) 해당 시스템이 종이 기반의 선하증권과 동등한 법적 인정을 부여하는 준거법의 적용을 받는 전자선하증권(“E-Bills”)만을 허용해야 하며;
 - ii) 해당 시스템이 신뢰성 및 아래의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;
 - 독립된 기관에 의한 감사; 또는
 - 감독, 규제 또는 인증 기관이나 해당 자발적 제도에 의한 공표; 또는
 - 적용되는 산업 표준

Member 는 각자 Club 의 담보 변경에 관한 정확한 세부사항을 검토 및 해당 Club 의 Rules 에 따라야 하며, 본 통지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Club 의 Rules 가 우선 적용됩니다.

8. '승인된 것으로 간주' 되는 요건을 벗어난 시스템의 경우,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기존의 승인 시스템이 계속 적용되며, 시스템 제공업자는 Group Secretariat(secretariat@internationalgroup.org.uk)에 연락 및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.

2025 년 2 월 20 일 이후의 승인 절차

9. Member 가 승인된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, 2025 년 2 월 20 일부터, 요건을 충족하여 Group 에 승인 요청하는 모든 시스템의 제공업자는 Group 의 웹사이트에 등록됩니다. Group 의 Club 은 지금까지 해왔던 승인 통지에 대한 회람을 더 이상 발행하지 않습니다. '승인된 것으로 간주' 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Group 의 Website 에 등록하기 위해서는, 해당 기준이 어떻게 충족되는지에 대한 증빙자료와 함께 Group Secretariat 에 문의해야 합니다.
10. 기존의 Group 승인 절차(과거 및 미래 모두)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모든 시스템도 Group 의 Website 에 등록됩니다.

기존에 승인받은 시스템 제공업자

11. 의심의 여지없이, 현재까지 Group 의 승인을 받은 시스템 제공업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.

Club 의 담보 관련 주의사항

12. 마지막으로, 선하증권이 종이 기반으로 발행되든 승인된 E-Bills 제공업자를 통해 발행되든 상관 없이, 화물 운송과 관련한 Club 의 Rules 상의 일반적인 담보 제외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이러한 담보 제외 사항에는, 운송계약에 명시된 항구 또는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화물을 양하하는 경우, 선일자(ante-dated) 또는 후일자(post-dated) 전자 서류/기록을 발행/작성하는 경우, ad valorem Bill 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, 강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 Hague Visby Rules 보다

불리한 운송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, 그리고 유통가능한(Negotiable) 전자 서류/기록의 제공없이 화물 인도하는 경우 (전자거래시스템에서는 해당 거래시스템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화물 인도하는 경우를 의미) 등을 포함합니다.

IG의 모든 Club이 이와 유사한 내용의 Circular을 발행하였습니다.

본 번역본은 한국 Member를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며, 원본(영문본)이 우선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